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에 ‘유흥주점영업’ 추가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5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에 ‘유흥주점영업’ 추가	2
※ 참고자료	10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2023)	10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4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3조).

Ⅲ. 검토의견

1.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에 ‘유흥주점영업’ 추가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24. (생략) <u><신설></u>	제3조(적용대상) ① ----- ----- ----- -----. 1. ~ 24. (현행과 같음) <u>24의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u>
25. (생략) ②·③ (생략)	2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¹⁾을 정하고,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①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

1) (참고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2023)

리2), ②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3), ③ 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4)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안]

구분	관리자 교육	자가 측정	오염도 검사
근거	법 제7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주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측정대행업체 (환경검사시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①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 ② 보수교육(3년마다 1회)	① 유지기준(1회/년) ② 권고기준(1회/2년)	① 유지기준* 준수 ② 자가측정 이행 및 교육 이수
처분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5백만원 이하)	① 과태료(1천만원 이하) ② 개선명령(1년 내)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2)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런데 최근 유흥주점영업과 관련하여 업소 내 냉방시설 위생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병’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⁵⁾가 있어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유흥주점영업시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⁶⁾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⁷⁾을 추가하여 유흥주점의 실내공기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유흥주점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흥주점영업시설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정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

5)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에서 냉방시설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음.

‘강남 역병’ 클럽 7곳 레지오넬라균 발견...“방역대응 미흡”, 2022.08.24., 중앙일보

6)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7) 2022년 기준 유흥주점영업소 52,144개소, 300㎡ 이상은 4,937개소(환경부)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의 다중이용업으로서 영업장 층별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10)에 따라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타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

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营业을 말한다. 다만,营业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0)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营业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자가측정 등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이해관계자¹¹⁾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¹²⁾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¹³⁾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환경검사 및 결과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11) 한국유통음식업중앙회

12) 인천시, 경기도 수원시, 남양주시 등

13)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질병관리청,2024)」 Ⅲ. 레지오넬라 환경관리

4.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계획

※ 참고자료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2023)

번호	구분	시설군	개소수	규모 기준(연면적)
1	가. 일반시설	지하역사	678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72	2,000㎡ 이상
3		철도역사 대합실	29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5	2,000㎡ 이상
5		항만시설 대합실	6	5,000㎡ 이상
6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8	1,500㎡ 이상
7		도서관	341	3,000㎡ 이상
8		박물관	198	3,000㎡ 이상
9		미술관	52	3,000㎡ 이상
10		대규모점포	1,269	모든 대규모점포
11		장례식장(지하 한정)	210	1,000㎡ 이상
12		영화상영관	581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13		학원	310	1,000㎡ 이상
14		전시시설(육내 한정)	85	2,000㎡ 이상
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688	300㎡ 이상
16		목욕장	866	1,000㎡ 이상
		소계	6,428	
17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의료기관	3,380	2,000㎡ 이상 / 병상 수 100개 이상
18		산후조리원	394	500㎡ 이상
19		노인요양시설	2,155	1,000㎡ 이상
20		어린이집	5,541	430㎡ 이상
21		실내어린이놀이시설	265	430㎡ 이상
		소계	11,735	
22	다.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6,592	2,000㎡ 이상
23	라. 그 외 기타시설	업무시설	9,106	3,000㎡ 이상
24		두 가지 이상 용도시설	20,111	2,000㎡ 이상
25		실내공연장	74	객석 수 1,000석 이상
26		실내 체육시설	147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소계	29,438	
		총계	54,193	